

##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술강사 모집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05.12.29. 제정 / '17.3.21. 일부개정, 법률 제14630호) 등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및 지자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7개 시·도 운영기관(이하 '지역운영기관')과 협력하여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대구문화재단 대구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는 2019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배치되어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하실 “학교 예술강사” 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11월 8일  
(재)대구문화재단 대표

본 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제13조의2)에 의거 취업취약계층의 우선적 참여를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속하며, 한정된 예산으로 학생들의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창의·인성교육을 활성화하는 한편, 현장 예술인들의 창작활동과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목적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역 내 분야별 학교 수요 및 예산 규모에 따라 신규강사 선발이 없을 수 있습니다.**

※공고문, 신청 및 활동관련 FAQ, 접수 매뉴얼을 모두 확인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접수신청, 제출서류 누락 등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1. 신청자격

## 1) 유형별 출강가능 교육과정

- A유형 : 기본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선택과목, 토요동아리, 초등 돌봄교실
- B유형 : 창의적 체험활동, 토요동아리, 초등 돌봄교실

## 2) 분야별 지원 가격 기준

분 야	A유형	B유형
연 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분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li> <li>• 연극 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자</li> <li>• 연극 관련학과 대학원 졸업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분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li> <li>• 연극 관련학과 2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졸업 후 현장경력이 2년 이상인 자</li> <li>• 최근 4년 이상 해당분야 현장경력자</li> </ul>
영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분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li> <li>• 영화 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자</li> <li>• 영화 관련학과 대학원 졸업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분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li> <li>• 영화 관련학과 2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졸업 후 현장경력이 2년 이상인 자</li> </ul>
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분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li> <li>• 무용 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자</li> <li>• 무용 관련학과 대학원 졸업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li> <li>• 무용 관련학과 2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최근 2년 이상 해당분야 현장경력자</li> </ul>
만화·애니메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분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li> <li>• 만화애니메이션 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자</li> <li>• 만화애니메이션 관련학과 대학원 졸업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분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li> <li>• 만화애니메이션 관련학과 2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졸업 후 현장경력이 2년 이상인 자</li> <li>• 만화애니메이션 관련학과 3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졸업 후 현장경력이 1년 이상인 자</li> <li>• 최근 5년 이상 해당분야 현장경력자</li> </ul>
공 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분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li> <li>• 공예 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자</li> <li>• 공예 관련학과 대학원 졸업자</li> <li>• 최근 3년 이상 해당분야 현장경력자</li> </ul>
사 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분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li> <li>• 사진 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자</li> <li>• 사진 관련학과 대학원 졸업자</li> <li>• 최근 3년 이상 해당분야 현장경력자</li> </ul>
디자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분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li> <li>• 디자인 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자</li> <li>• 디자인 관련학과 대학원 졸업자</li> <li>• 최근 3년 이상 해당분야 현장경력자</li> </ul>

※위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고 대구광역시 거주자여야 함

※관련학과 여부는 심사 시 성적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 3) 대학 적용 기준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대통령령 제24610호)에 의해 설립된 학교(한국예술종합학교)
-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한 학사 학위 또는 전문학사 학위는 고등교육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 및 동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4년제 대학교 졸업자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음.

## 2. 심사전형

### 1) 심사개요 ※신규지원자 및 일부 전년도 활동강사에 한함

- 심사일정 : 2018. 12. 10.(월) ~ 12. 14.(금) / 대구공연예술연습공간 예정
- 심사절차 : 해당자에 한해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단계별 패스/논패스로 진행  
(\*대상 : A신규, B기존활동, C유형변경, D지역이동, E미활동)

구분	일정	내용	*대상				
			A	B	C	D	E
1단계	11.26(월)~30.(금)	서류검토	○	○	○	○	○
2단계	12.4.(화)	서류검토 결과 발표		○			
		서류/면접심사 대상 공지	○		○	○	○
3단계	12.10(월)~14.(금)	서류/면접 심사	○		○	○	○
4단계	12.28.(금)	최종 선정결과 발표	○		○	○	○

※예산규모 및 기존강사 활동 여부에 따라 신규강사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직전년도 기준 유형변경, 지역이동이 없는 전년도 활동강사는 연간활동계획서 검토로 심사 같음

※사업 운영 여건에 따라 미활동강사 면접(인터뷰)심사 생략할 수 있음

### 2) 심사항목 및 심사방법

- 심사대상 : 신규지원자 및 전년도 활동강사 중 유형변경, 지역이동자에 한함
- 심사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모의수업, 실기, 인터뷰 등)

○ 심사항목

전형	심사항목	비고
서류 심사	[정량적심사] ① 학력 ② 자격증 ③ 경력(교육활동, 예술활동)	- 서류심사 결과 60점 미만자는 탈락 - 제출 완료된 서류에 한해 심사 <b>(증빙자료 미비 시 추가제출 불가)</b> - 서류심사에 필요한 서류 중 하나라도 제출 누락한 경우, 서류심사 대상사에서 제외
	[정성적심사] ① 자기소개(문화예술교육경력 및 장단점) ② 학교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계획 ③ 기타사항(관련 자격증, 연수, 상훈 등)	
면접 심사	① 관심 및 열의도 ② 전문성(예술, 교육) ③ 적합성 등	[심사방법] : 면접, 모의수업, *실기 *무용분야의 경우 심사위원 요청 시 무용 기본동작 시연 할 수 있음
인터뷰	[인터뷰내용] ① 예술강사 활동 의지 확인 ② 지역이동 사유 등	- 전년도 선발강사 중 미활동 강사 - 직전년도 기준 3년이상 연속활동강사 중 지역이동 강사 *사업운영 여건상 인터뷰 생략 가능

※온라인접수 시 작성한 연간활동계획서를 기반으로 서류심사(정성평가 항목) 진행

※전년도 활동강사의 경우 필요에 따라 전문가의 점검 및 컨설팅(인터뷰) 가능

3) 동점자 발생 시 우선 선발 고려기준

-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참여 경력 보유자
- 문화예술교육사 또는 교원자격증 소지자
- 강사활동연도 기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청년(만 34세 이하)  
※'정부합동 청년고용 종합대책'에 따라 청년 참여비율 확대
-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제출한 자

3. 유의사항

1) 신규지원자 유의사항

- A유형 또는 B유형 중 한 가지로만 신청 가능  
※A유형 신청 가능자는 B유형으로도 신청 가능
- 대학졸업자는 2019년 2월 졸업예정자를 포함  
※졸업예정자는 2019년 3월말까지 졸업증명서를 반드시 운영기관에 제출 필수
- 현장경력자(교육활동경력, 예술활동경력)는 연 1회 이상 활동 실적이 있는 자로서, 증빙서류 필히 제출 ※최근 5년까지의 증빙서류 제출(사본가능)

- 교육활동경력 : 경력증명서를 통해 증빙 가능(학교 및 사회 예술강사 참여 경력 별도 증빙 불필요)  
**※반드시 경력기간 내 교육활동시간 명기**
- 예술활동경력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활동 증명 방법 및 자료준비 안내(예술인복지법 시행규칙\_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에 따라 증빙 가능

※예술활동증명 방법 관련 상세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www.kawf.kr) 참고

**※예술인 활동증명서 제출이 아닌, 분야별 ‘세부기준’에 따라 예술활동경력을 증명**

- 기타 서류 증빙(상훈, 연수 등)은 사본제출 가능
- 제출 완료(또는 증빙 완료)된 서류에 한해서만 심사 가능

**※필수서류 제출을 누락한 강사의 경우 미접수 처리 가능하며, 필수서류 외의 기타 서류 중 일부를 누락한 강사의 경우 제출 완료된 서류에 한해서만 심사 가능**

## 2) 전년도 활동강사 유의사항

- 온라인 접수 시 작성한 **‘연간활동계획서’**를 **지역별 전문가가 점검**, 작성 내용이 학교문화예술교육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경우, 컨설팅 형태의 인터뷰 추진

※지역의 상황에 따라 인터뷰는 생략될 수 있음.

- 전년도 활동강사는 2018년도 선발되어 2018년 10월까지 출강결과(1시수 이상) 등록 및 지역운영기관 승인 건이 있는 강사
- 전년도에 선발되었으나 활동하지 못한 0시수 강사(2018년 10월 출강 승인 기준)의 경우, 별도 인터뷰 추진

※지역의 상황에 따라 인터뷰는 생략될 수 있음.

- 전년도 강사유형(자격기준)과 **다른 유형으로 활동을 희망하는 경우, 신규지원자와 동일한 선발 절차 추진**

※B유형에서 A유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전년도와 다른 유형으로 지원한 강사가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 기존 유형으로 활동가능

- 강사 거주지 기준으로 접수, 접수된 주소지역이 우선 활동지역으로 설정되며, **지역 변경자(전년도 선발지역 기준)의 경우 신규지원자와 동일한 선발 절차 추진**

**※지역 변경의 경우, 심사 탈락 시 2019년도 활동 불가**

**※단, 직전년도 기준 3년 이상 동일 지역 및 분야로 연속 선발 활동 시, 심사 생략**

## 3) 강사활동 제한사항

- 성범죄 경력이 있는자(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자 및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단,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 i)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ii)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iii)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강사료 부정수급, 출강결과 허위등록, 주소지 허위등록 등 비위행위 전력이 있는 자 ※단, 경미한 경우에는 사안별 검토 가능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7조의2(문화예술교육사)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자
- 강사 접수 시 기재된 주소와 채용 시 제출한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상이할 경우, 배치가 취소될 수 있음
- 기타 활동 제한사항 관련 운영기관 자체 내규마련 필요(제한 수위 등)
  - 관련 문제 발생 시 지역 내규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결정

#### 4.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18. 11. 9.(금) 14:00 ~ 11. 22.(목) 18:00 까지  
 ※전년도 활동강사, 신규지원 강사 접수기간 동일
- 접수방법 : 온라인시스템(aschool.arte.or.kr)을 통한 접수 및 증빙서류 등기 우편 제출(기관 방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증빙서류는 '신규지원자' 및 '전년도 활동강사'중 활동유형 및 지역 이동을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제출

#### 5. 제출서류

- 응시자의 온라인 신청 화면 출력 인쇄본 1부
-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1부 (학부이상 취득한 모든 학력에 해당)
- 성적(예정)증명서 원본 1부 (학부이상 취득한 모든 학력에 해당)
- 경력증빙자료(예술활동, 교육활동)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교원자격증(자격취득 예정증명서)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타 증빙자료 사본 각1부 (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원본 1부(붙임1 서식활용)
-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지침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

는 증빙자료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취업취약계층 자료 증빙은 동점자 발생 시 우선선발 고려기준에 해당

\* 취업취약계층: ①장기실업자(구직등록일 기준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청년은 졸업일 기준), ②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 이하: 차차상위계층) ③고령자 ④장애인 ⑤여성가장 ⑥결혼이민자 ⑦북한이탈주민

※주민등록등본 : 제출 불필요 (채용시 별도 제출 요청)

○ 제출방법 : 등기우편으로 제출

○ 제출기한 : 신청마감일 **2018.11.22.(목)** 등기우편 소인까지 유효

**※제출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시 심사에서 제외되어 탈락될 수 있음**

○ 문의 및 제출처 : (재)대구문화재단 대구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분 야	운영기관	문의 및 제출처
7개 분야 연극, 영화, 무용, 디자인,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재)대구문화재단 대구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문의: 053-430-1283 우)41950 대구 중구 대봉로 260 대구문화재단 2층 문화교육팀 예술강사 담당자 앞

※접수지 기준 지역운영기관 송부 필수 **(타 기관으로 발송할 경우 미접수 처리)**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6. 채용개요

### 1) 근로 기간

○ 사업기간 : 2019년 3월 ~ 12월

○ 채용기간 : 상기 사업기간 중 최초 출강일부터 최종 출강일까지

※배치된 학교의 교육계획 및 교육과정에 따라 강사별 채용기간은 상이함.

### 2) 근로 조건

○ 신분 : 기간제 초단시간 근로자(연 10개월, 월 60시간, 주 15시간 미만)

○ 보수 : 연간 배정시수에 따라 지급하며 1시수당 43,000원

○ 3대 보험 적용 :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 3) 근무 장소

○ 대구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등

※신청 지역 내 학교 배치 원칙이나, 지역별 수요 등에 따라 타지역으로 배치될 수 있음

※학교에 종일 근무하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수업시간에 수업 진행

#### 4) 담당 업무

- 배치된 학교의 교육과정별 커리큘럼을 토대로 학교담당교사와의 협력 하에, 연간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 연간교육 계획수립 및 분야별 예술교육 실시
- ※분야 : 연극, 무용, 영화, 만화·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 사진
- ※수업 : 기본교과, 선택과목, 창의적체험활동, 토요동아리, 초등 돌봄교실

#### 5) 유의사항

-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희망근로, 공공근로 등)과 예술강사 활동 병행 불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복참여 불가
- 성범죄 경력조회 및 기타 범죄경력조회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채용이 취소됨
- ※단,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자의 경우 판결 등의 확정 전까지 교육활동 참여 제한

-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7. 기타문의

- (사)한국국악협회 대구지부(국악분야) : 053-256-7957
- 대구문화재단(국악 외 7개분야) : 053-430-1283

#### 8. 향후일정

- 2차 심사 대상자 발표 : 2018. 12. 4.(화) 예정
- 2차 심사 일정 : 2018. 12. 10.(월) ~ 12. 14.(금) 예정(세부일정 별도안내)
- 최종 선발결과발표 : 2018. 12. 28.(금) 예정 / 재단 및 교육센터 홈페이지
- 학교-강사 배치 업무 진행 : 2018. 12월 말 ~ 2019. 1월 초
- 학교-강사 최종 배치 결과 발표 : 2019. 1월 말
- 학교 사전 방문 및 강사계약 : 2019. 2월 ~ 3월 예정
- 강사 학교 출강 : 2019. 3월부터(강사별 상이)

※상기 일정은 예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신규참여강사는 향후 (재)대구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연수에 참석하여야 함



[붙임1]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붙임2] 2019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술강사 신청 및 활동 관련 FAQ

[붙임3] 2019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온라인시스템 접수 매뉴얼(예술강사용). 끝.

[별표 1] <개정 2016. 5. 4.>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제2조 관련)

1.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사람은 문화예술 분야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아래 표의 2 이상의 문화예술 분야나 세부 기준란의 2 이상의 목에 해당되는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술 활동 증명을 위한 하한 기준을 1점으로 보아 해당 실적을 점수로 환산(예를 들어, 3년에 3편이 하한일 경우 3년에 1편의 실적이 있으면 1/3점으로 한다)하여, 그 환산점수의 합계가 1점 이상인 사람도 포함한다.

문화예술 분야	세부 기준
문학	가.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시(동시), 시조, 수필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최근 5년 동안 1편(단편의 경우는 3편) 이상의 소설(동화, 청소년), 평전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최근 3년 동안 1편 이상의 희곡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라. 최근 5년 동안 3편 이상의 평론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마. 최근 5년 동안 1권 이상의 문학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미술 (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사진, 건축	가.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 미술·사진·건축 작품을 관련 매체에 발표하거나 미술·사진·건축 전시회에 작품을 전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최근 5년 동안 1회 이상 미술·사진·건축 작품 개인전을 열거나 1권 이상의 미술·사진·건축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미술·사진·건축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미술·사진·건축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라. 최근 3년 동안 3회(예술감독 등 기획자의 경우는 1회) 이상의 미술·사진·건축 전시회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음악, 국악	가.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음악·국악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최근 3년 동안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서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 등에 3편 이상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최근 3년 동안 3곡 이상의 악곡을 작사, 작곡, 편곡, 가창 또는 연주하여 음반이나 음악·국악 공연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라. 최근 3년 동안 1장 이상의 음반을 내거나 1권 이상의 음악·국악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마. 최근 3년 동안 음악·국악 공연에서 3회 이상 지휘한 실적이 있는 사람

	<p>람</p> <p>바.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음악·국악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음악·국악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사.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음악·국악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아. 최근 3년 동안 3장 이상의 음반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p>
무용	<p>가.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나. 최근 3년 동안 무용 공연에서 1회 이상 안무를 담당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다.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무용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라.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p>
연극	<p>가.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나. 최근 3년 동안 연극 공연에서 1회 이상 연출을 담당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다. 최근 3년 동안 1편 이상의 희곡을 연극 공연이나 관련 잡지 등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라.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연극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마.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p>
영화	<p>가. 최근 3년 동안 「저작권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3편 이상의 영화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나. 최근 5년(「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호제7호에 따른 단편영화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저작권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에서 1회 이상 연출을 담당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다. 최근 5년 동안 1편 이상의 시나리오를 「저작권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를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라.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영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영화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마. 최근 5년 동안 「저작권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2편 이상의 영화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p>

연예(演藝)	<p>가. 최근 3년 동안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서 방송된 드라마, 예능·교양 프로그램 등에 3편 이상 출연하거나 1편 이상 연출 또는 진행을 담당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나. 최근 3년 동안 패션쇼에 3회 이상 출연하거나 3편 이상의 광고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다.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예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라. 최근 3년(드라마 중 연속극의 경우는 최근 5년) 동안 1편 이상의 대본을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서 방송된 드라마, 예능·교양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마.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바. 최근 5년 동안 3편 이상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사.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예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p>
만화	<p>가. 최근 5년 동안 1편 이상의 만화 작품을 6개월 이상 연재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만,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p> <p>나.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만화 작품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만,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p> <p>다. 최근 5년 동안 1권 이상의 만화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라.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 만화 전시회에 작품을 전시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마.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만화 비평을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만화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만, 만화 비평 발표의 경우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p> <p>바. 최근 5년 동안 3편 이상의 만화 작품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기술지원 인력의 경우는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참여)</p> <p>사. 최근 5년 동안 3회 이상의 만화 전시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p>

2.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세부 기준
가.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최근 1년 동안 12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동안 360만원 이상인 사람
나. 최근 3년 동안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전체 소득의 50% 이상인 사람

비고: 제1호의 만화란의 소득 및 제2호의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은 예술 활동에 대한 대가로 받은 임금 및 수당, 원고료, 인세, 저작권료, 저작인접권료, 예술품 판매대금, 보조금, 기부금, 상금 등을 포함하며, 강연료는 제외한다.

**참고 2**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취약계층 해당여부는 사업수행기관이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하는 것이 원칙

구 분	대상자 확인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저소득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 기준중위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납입)액 한도</li> <li>-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납입) 한도</li> </ul>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672,000	52,565	26,652	53,034	×
			56,444	28,617	56,948	○
	- 2인 이상 가구 기준중위소득 60%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납입) 한도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1,708,000	53,474	27,773	54,093	×
			57,420	29,823	58,085	○
	3인	2,210,000	69,711	56,874	70,459	×
			74,856	61,071	75,659	○
	4인	2,712,000	84,887	85,412	85,881	×
			91,152	91,715	92,219	○
	5인	3,213,000	100,955	108,657	102,190	×
108,405			116,676	109,732	○	
6인	3,715,000	116,936	131,825	118,354	×	
		125,566	141,554	127,089	○	
7인	4,216,000	131,976	150,960	133,811	×	
		141,716	162,101	143,686	○	
8인	4,718,000	147,490	167,711	149,745	×	
		158,375	180,088	160,796	○	
9인	5,220,000	163,172	184,310	165,762	×	
		175,214	197,912	177,995	○	
10인	5,721,000	179,545	200,975	182,496	×	
		192,795	215,807	195,964	○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인단서(전문의)</li> </ul>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li> <li>• 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li> <li>• 만20세~만35세 청년으로서 최근 6개월 이내에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li> </ul>					
결혼이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F2 또는 F-5, F-6비자)</li> </ul>					

구 분	대상자 확인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li> </ul>		
북한이탈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li> </ul>		
위기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로 소년원이 발급한 수용증명서가 있는 자</li> <li>● 보호관찰청소년으로서 보호관찰 기관이 인정한 자</li> <li>●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li> <li>● 15~20세인 청소년으로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li> </ul>		
여성가장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관계등록부</li> <li>● 부모가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li> </ul>	
	배우자 有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성매매피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 기관 등의 확인서</li> </ul>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li> </ul>		
갱생보호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li> </ul>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li> </ul>		
노숙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li> </ul>		